

제206회 임시회
광진구의회

**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
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검토보고서**



2017. 3. 7.

**기획행정위원회
전문위원**

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검토보고서

의안 번호	제1318호
----------	--------

2017.3.7.
기획행정위원회

1. 제안자 : 광진구청장

2. 개정이유

수강료 징수기준 및 65세 이상 감면자에 대한 감면비율을 변경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사항 보완 및 자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, 만 65세 이상 감면대상자를 노인복지법 제26조 (경로우대) 규정에 의한 대상자로 변경하여 상위법 적용

3. 주요내용

가. 수강료 징수범위 조정 (별표1의 2.수강료)

- 단서규정을 두어 위원회는 수강인원, 강사수당, 자치회관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서 수강료를 20%이내에서 조정

나. 수강료 감면비율 20%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자 및 감면비율 변경 (별표2.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)

- 감면대상자 변경

- 기존 : 광진구 거주자 중 65세 이상 노인
- 변경 :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 중 광진구 거주자

- 감면비율 연착륙 하향 조정

- 기존 : 감면비율 20%
- 변경 : 40% (2017년), 30% (2018년), 20% (2019년 이후)

다. 개정(안) 별표1 및 별표2의 수강료 및 감면기준 적용례 반영

- 2016.9.23.자 개정 조례로 징수된 수강료에 대해 개정(안)의 수강료 및 감면기준을 적용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노인복지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기획홍보과와 합의되었음
- 라. 입법예고 : 2017.01.13~02.02 (결과 : 의견없음)

5. 검토의견 (전문위원 정수용)

- 본 개정조례(안)은 2017년 1월 23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여 2017년 3월 2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.
- 본 조례(안)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범위를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, 만 65세 이상 감면자의 수강료 감면비율을 조정하여 수강료 인상에 따른 수강생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- 주요 개정내용으로는
 - 별표 1의 2, 수강료에 단서조항을 두어 위원회에서 수강인원, 강사수당, 자치회관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강료를 20%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,
 - 별표 2의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에서는
 - 수강료 감면비율 20%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자를 “광진구 거주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” 에서 “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 중 광진구 거주자” 로 변경하고,
 - 감면비율은 기존 20% 에서 2017년 40%, 2018년 30%, 2019년 이후 20%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.
- 종합 검토의견으로,
 - 위원회에서 수강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자치회관 운영을 도모하고, 경로우대 대상자의 수강료 감면비율을 조정

하여 광진구에 거주하는 경로우대 대상자가 수강시 부담을 완화시키는 등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일부개정 추진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향후 위원회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수강인원, 강사수당, 자치회관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강료를 20% 이내에서 조정할 시 인근 다른 동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,
- 감면비율 하향조정 내용 중 2017년도에 접수하여 수강료를 납부한 주민의 감면부분 환불 등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안에 대하여 의견청취 후 심의·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